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7가합57036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고1. A

2. B

3. C

4.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철

변론 종결2019. 3. 8.

판결 선고2019. 4. 5.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8,589,543원 및 그 중 308,442,264원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254,49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D은 254,490,000원, 피고 B, C은 피고 D과 공동하여 위 돈 중 각 127,24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광고물 제작업을 영위하는 피고 A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F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

2009. 6. 29.	100,000,000원 (2017. 6. 23. 68,400,000원으로 변경)	2012. 6. 29. (2018. 6. 25.)	100,000,000원	제1보증
2014. 8. 8.	170,000,000원	2015. 8. 7. (2017. 8. 7.)	200,000,000원	제2보증
2014. 10. 17.	67,500,000원	2015. 10. 16. (2017. 10. 17.)	75,000,000원	제3보증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고,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위 피고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피고 A은 2017. 7.경 E 사업장을 폐쇄하였고, 원고는 F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7. 9. 14. 308,442,264원(= 제1 보증건 69,011,383원 + 제2 보증건 171,384,964원 + 제3 보증건 68,045,9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미수추가보증료는 147,279원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이율은 2016. 2. 1. 이후 연 10%이다.

라. 피고 A은 2016. 11. 24.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처인 피고 B과 장모인 피고 C에게 각 1/2 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과 피고 C은 2017. 3. 10. 피고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09. 3. 6. 채권최고액 215,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F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D이 위 피보전채권액 165,000,000원을 변제하면서 2017. 3. 28.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308,589,543원(= 대위변제금 308,442,264원 + 미수추가보증료 147,279원) 및 그 중 308,442,26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7. 10. 25.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신용보증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보증과 다르지 않으므로(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779 판결 등 참조),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기금은 민법 제481조에서 정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다1076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다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보증인 등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인하여 그 채권이 변제자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변제자는 이전받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제가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은행에 합계 308,442,264원을 대위변제하여 피고 A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F은행의 각 대출금채권은 민법 제481조에 정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변제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11. 24. 이전에 성립되어 있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각 대출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피고 B, C, D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이 운영하는 E의 재무제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 A이 보유한 특허권 및 상표권의 가치를 감안하면 피고 A은 무자력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피고 A은 2012.경 장모인 피고 C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물변제로 양도하되 명의만 피고 B와 공동명의로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중 제1 보증건이 2017. 6. 25.경 만기가 되었고, 보증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피고 A은 원고에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 및 이로 인한 자산 감소 사실을 알렸다. 원고는 이를 반영하여 보증한도를 68,400,000원으로 감액하고 보증기간을 2018. 6. 25.로 하는 보증조건변경 통지를 하였는데 이를 감안하면 피고 A에게 사해의사가 없다.

2)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4, 9호증, 을 1, 5, 7, 10, 12, 13, 14, 16,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F은행, 신용보증기금, H, I, J은행, K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A은 2007. 7. 경 'E'라는 상호로 현수막 실사 출력소를 설립하였고, 2009.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2010. 10. 공장 제조시설로 등록한 후 간판물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 A은 2010. 5.경부터 간판제작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종래의 절곡, 용접, 샌딩, 도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 조립방법으로 파사드형 갈바 간판제작이 완성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피고 A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특허를 등록하고 당해 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할 제품에 적용시킬 부품 등에 대한 디자인 110개, 'L', 'M'등의 서비스표 5개를 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허 등'이라고 한다).

1	N	O일자	A	탈착식 조립형 파사드 간판
2	P	Q일자	A	조립형 파사드 간접 조명장치
3	R	S일자	(주)T A	조립식 간판장치
4	U	V일자	(주)T A	확장구조의 조립식 간판장치
5	W	X일자	A	멀티형 확장소켓

다) 피고 A은 위와 같은 간판제작기술과 관련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3. 5. 1. Y 주식회사(이하 'Y'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라) Y는 2014.말경부터 가맹점을 모집하였고, 2016.경까지 총 계약금액 18억 6,680만 원 규모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가맹계약금 중 6억 7,660만 원은 초도 물품비, 3억 4,100만 원은 소멸성 가맹계약금이고, 8억 5,748만 원은 본사상표홍보비 명목의 대금이다.

마) Y는 'Z'이라는 브랜드로 프렌차이즈 사업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 TV 및 라디오 광고 송출 등 광고비를 지출하였고, 2015.년부터 2016.까지 지출한 광고비는 총 9억 여 원 정도이다.

바) 한편 Y는 특허권의 보호와 간판제작 물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2015. 1. 30.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과 특허권 공동명의 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출원심사 중이던 위 순번 3, 4의 특허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사) E와 Y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무재표상 매출 및 영업이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	매출액	826	511	340
영업이익	77	82	41	
Y	매출액	181	3,081	1,929
영업이익	23	61	-214	

아) Y는 2017. 7. 11.경 T과 '물류통합 및 Z의 유통에 대한 모든 권한 및 관리책임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보유하고 있는 금형의 소유권을 T에 이전하여 주고 사업장을 폐쇄하였고, 그 무렵 E 또한 사업장을 폐쇄하였다.

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이 총 2,095,119,039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84,634,500원이다.

- ① F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624,557,814원
- ②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 1,267,177,637원(대지급금 9,969,809원 포함)
- ③ H에 대한 채무 3,796,498원
- ④ I에 대한 채무 5,563,549원
- ⑤ AA에 대한 채무 1,426,339원1) ⑥ Y의 J은행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 89,880,000원
- ⑦ Y의 K 리스계약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102,717,202원

3) 피고 A의 무자력 여부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은

2,095,119,039원이고, 적극재산으로는 384,634,5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특허 등의 무형자산이 있다{E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무형자산 외에도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매출채권, 재고자산의 기재가 있으나, 고정자산의 경우 대부분 2009. 내지 2011.에 구입한 간판제작용 기계장치로 잔존가치(내용연수 5년 적용)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처분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경우 그 실존 및 회수가능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허 등의 가치가 소극재산액과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차액인

1,710,484,539원을 초과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인 AB에 대한 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T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E의 재무제표 및 Y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무형자산금액은 4억 8,000여 만원 및 6억 3,000여 만 원이다.

② 위 감정인은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 동안 기술산업화로 인하여 발생될 경제적 이익을 추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수익(이익)접근법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 등의 가치를 총 21억 7,600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특허 등이 E와 Y 및 T에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전제 하에서 E에서 산출된 가치를 2억 800만 원, Y에서 산출된 가치를 11억 9,600만 원, T에서 산출된 가치를 7억 200만 원, 디자인권만의 가치를 7,000만 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③ 위 감정인은 E에 대한 이 사건 특허 등의 기술가치를 E의 매출이 과거 3개년(2014년~2016년) 평균매출액인 5억 6,600만 원으로부터 시작하여 매년 10%씩 증가한다고 추정하고, 이 사건 특허 등 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인 9년 동안의 여유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에 기술기여도를 반영하여 2억 8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위 산정 과정에서 할인율은 E에 대한 가중평균자본비용 11.3%로, 이 사건 특허 등의 기술기여도는 48.47%로 추정하였다. Y의 경우 특허가 없는 경쟁업체의 매출액이 상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2017. 이후 매출액이 2016. 매출액에서 매년 30%씩 9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여유현금흐름을 할인한 기술가치액이 5억 8,000만 원으로 산정된다고 하면서도, Y가 가맹점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로열티 금액 11억 7,698만 원이 '로열티 공제법'으로 계산한 특허권의 가치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추정매출액에 로열티율(업종별 로열티 통계의 중앙값에 해당 기술의 증감율을 적용한 수치)을 적용하여 할인하는 로열티 공제법으로 계산한 11억 9,600만 원으로 기술가치를 평가하였다. T의 경우 T이 옥외간판 광고자재 사업을 시작하여 AC그룹 등에 판매한 매출액이 57억 2,300만 원이고 위 매출액이 이 사건 특허 등 중 순번 3, 4번의 특허권을 이용한 매출이라는 전제 하에 위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년 성장률 5%, 기술기여도 42.21%로 추정하여 기술가치를 7억 2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④ T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변경된 특허를 자신의 간판 프레임 관련 사업에 거의 활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간판관련 사업 매출액 또한 이 사건 특허권 등과 일부만 관련이 있다고 회신하고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에서 나타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특허 등의 가치는 17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위와 같은 감정인의 감정은 E와 Y가 정상적이고 원활한 영업을 지속하여 9년 동안 매년 10% 또는 30%의 지속적인 매출성장을 달성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와 Y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사업장을 폐쇄하였다.

② 또한 위 감정인은 Y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에 있어서 Y가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 성격으로 받은 금액이 11억 7,698만 원이라는 전제 하에 여유현금흐름을 할인한 기술가치액 평가액을 배제하고 로열티공제법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Y가 가맹점을 모집하여 수령한 돈 중 가맹계약금은 3억 4,100만 원이고, 8억 5,748만 원은 본사상표홍보비 명목의 돈으로서, Y가 각 가맹점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상 브랜드 구축을 위한 초도 마케팅 외에도 추가적인 광고가 필요할 경우 가맹점은 광고비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Y가 가맹비로 수령한 돈 등으로 2015.부터 2016.까지 실제로 9억 원 가량의 광고비를 지출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홍보비 명목의 돈이 이 사건 특허기술에 대한 로열티 성격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이를 제외할 경우 순수하게 로열티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여유현금흐름 추정에 의한 기술평가액에 가깝다. 이러한 여유현금흐름 추정에 의한 기술가치평가액에 의할 경우 이 사건 특허 등의 평가액 합계액은 15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③ T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은 T의 간판프레임 사업 전부가 이 사건 특허 등과 관련이 있다고 전제한 감정인의 전제사항과 배치된다.

4) 사해행위의 성립과 채무자의 악의 등 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채권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384,634,5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불과 2억 1,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C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양도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규 자금을 융통함이 없이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이상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피고 A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전제로 보증조건변경 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르지 아니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B, C과 전득자인 피고 D의 악의는 민법 제406조 후문에 따라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채권최고액 215,000,000원인 F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전득자인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65,000,000원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12. 7.을 기준으로 한 가액은 419,49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가액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부분은 254,490,000원(= 419,490,000원 - 165,000,000원)이 된다.

4)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취소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 합계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분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분 합계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 합계액의 범위 내이므로, 원고는 254,49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5)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5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B, 피고 C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각 127,254,000원(= 254,490,00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또한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가 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들의 가액배상의무는 그 채무의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전득자인 피고 D은 피고 B, 피고 C과 공동하여 2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상범

판사박현이

판사김재승

별지

1) 2016. 11. 24. 이전 할부금 잔액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2016. 12. 12. 결제된 1,737,076원 중 2016. 11. 24. 이후 사용 금액인 2016. 11. 25.자
할부대금 해당분 310,537원(3,105,375원 10개월), 2016. 11. 30. 사용분 200원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한다.